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16.1.1.] [총리령 제1233호, 2015.12.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 등을 받은 사실의 표시·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검사결과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 등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제도 개선(안 제52조제1항제8호라목)
축산물의 품질, 영양가 및 성분 등에 대하여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등의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

으로부터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용하도록 함.

나.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제2호마목(2) 및 제3호가목(7)(가)2))

1) 집유업을 하려는 자는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의 수량을 집유하는 농가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갖추도록 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검사기기 등으로 검사함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기구 및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따로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하고 기존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냉동 전환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 12 제4호바목 및 별표 13 제3호가목)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 및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추가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냉동 전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라. 영업자가 직접 하는 검사의 신뢰성 확보(안 별표 12 제4호거목 신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마. 식육의 위생적인 운반방법의 다양화(안 별표 13 제2호다목 등)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또는 도축업 등의 영업자 중 자신이 도살·처리 등을 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자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가축의 지육 등 식육을 매단 상태로 운반하는 것 외에 포장한 상태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도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 총리령 제123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4항 중 “시·도지사 및 인증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목제조보고서”를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랄인증 축산물 해당 여부

제52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버목·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1호나목6)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절단하여야 한다”를 “절단하되, 필요에 따라 더 작은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6) 나) 중 “절단하여야 한다”를 “절단하여야 하며, 추가로 절단하려는 경우에는 도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 부분을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6) 다)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 및 4등분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가목3)다) “안검(眼瞼)”을 “눈꺼풀”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안검”을 “눈꺼풀”로 한다.

별표 10 제2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유검사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는 다음과 같고, 그 수량은 집유하는 농가의 수 및 검사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 검사기기 등으로 검사함에 따라 필요하지 아니한 기구 및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검사기기 등의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는 갖추어야 하

며, 유성분검사기·세균수검사기 및 체세포수검사기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우유비중계	25. 온도계
2. 원통실린더	26. 냉장고
3. 주정계	27. 집락계산기
4. 진애검사기	28. 페트리디쉬
5. 산도측정장치	29. 가스버너 또는 전기풍로
6. 증류수 제조장치	30. 비이커(대·중·소)
7. 켈베르 유지계	31. 삼각플라스크(대·중·소)
8. 유지방 원심분리기	32. 메스플라스크(대·중·소)
9. 피펫 10ml(황산용)	33. 피펫(0.01-10ml 5종)
10. 피펫 11ml(우유용)	34. 자불소독기
11. 피펫 1ml(아밀알콜용)	35. 뷰렛
12. 향온수조	36. 메스실린더
13. 건열멸균기(드라이오븐)	37. 시험관
14. 고압멸균기	38. 평량병
15. 원심분리기	39. 시약병(대·중·소)
16. 저울	40. 스탠드
17. 교반기	41. 클램프
18. 수소이온농도측정기	42. 시험관꽂이
19. 부란기(인큐베이터)	43. 진열장(시약보관용)
20. 데시케이터	44. 현미경
21.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45. 유성분 검사기
22. 시험대(세척대를 포함한다)	46. 세균수 검사기
23. 알콜램프	47. 체세포수 검사기
24. 알콜시험판 또는 알콜시험관	

별표 10 제3호가목(7)(가)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같은 법인·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사의 기존 검사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가) 2개소 이상의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축산물 관련 연구·검사기관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의 제13호가목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종전의 6)) 중 “5)까지”를 “6)까지”로 한다.

2)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해당 차량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15일	1개월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제1호거목2) 중 “사용한 경우”를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의 5)를 6)으로 하

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 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제3호자목7) 중 “표시 · 광고한 경우”를 “표시 · 광고한 경우(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사실을 표시 · 광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제11호가목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중 “자목과”를 “바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와 자목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을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로 한다.

2)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	----------------------	-------------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제3호마목7) 중 “표시 · 광고한 경우”를 “표시 · 광고한 경우(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사실을 표시 · 광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다.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제9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9) 제3호버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제1호거목2) 중 “사용한 경우”를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여 원료로 혼입된 경우”로 하고, 같은 목 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9조제1항이나 별표 13 제4호라목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	-----------------------------	-----------------------------	-----------------------------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제9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까지”를 “사목까지”로 한다.

사. 별표 13 제4호거목을 위반한 경우 중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해당 차량	영업정지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개월

별표 12 제4호바목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으로,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별표 12 제4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결과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식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2 제2호사목에 따라 10℃ 이하로 냉각시켜 반출되어야 하는 지육에서 제외되는 지육은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1) 매단 상태로 운반. 이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포장한 상태로 운반
- 3)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별표 13 제3호가목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 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으로, “날짜”를 “날짜,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로,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별표 13 제3호하목2) 중 “종류·원산지”를 “종류”로 한다.

별표 14의6 제1호(가목4)다)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다) 중 “안검”을 각각 “눈꺼풀”로 한다.

별표 16 제2호(라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마목)부터(아목)까지,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라목) 및(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자.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 : 2016년 1월 1일
2. 별표 12 제4호(거목)의 개정규정 :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날

- 가. 2015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
 - 다. 2015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 2016년 7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1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